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세칙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건축학 프로그램의 교육인증과 관련된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건축학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건축학교육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의 설정,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및 다음과 같은 상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프로그램위원회
2. 교과과정위원회
2. 외부교육자문위원회
3. 평가위원회

제3조(졸업요건) 졸업자격(편입, 전부(과), 교류학생 포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졸업과제 심사를 통하여 부여한다.

1. (학생수행평가기준) 교과이수를 통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제시하는 모든 항목의 학생수행평가기준(SPC)충족
2. (의무학점) 건축학전공 표준교과과정표의 각 영역별 의무학점 이상 취득. 단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인한 과목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학년도 표준교과과정표의 영역별 의무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편입 및 전부(과)생에게는 표준교과과정 필수이수교과에 대한 의무학점 적용을 제외함.
3. (설계학점) 50학점 이상의 설계학점 취득. 단 2025년 입학 학생의 경우 48학점의 설계학점 취득.
4. (졸업요건) 아래에서 제시하는 4가지 선택항목 중 2가지 이상 항목 성취

항목	내용	비고
현장실습	4주 이상의 교과 또는 비교과 과정의 현장실습 1회 이상 참여	각 선택항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외국어성적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	
대외수상	전국 규모 이상의 국내외 공모전 및 학술대회 3위 이상 입상 또는 3회 이상 출품	
자격증취득	LEED-AP, G-SEED ID, BIM 전문가(건축) 2급, 건축기사 중 1개이상의 자격증 취득	

제4조(졸업과제 심사)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졸업과제 심사표」〈별지 서식1〉 및 학생 개인별 졸업과제 포트폴리오에 의거 졸업과제를 심사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적격여부 판정에 의해 졸업과제 성적(가부)을 판정한다. 졸업과제 심사에 요구되는 세부 제출요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세부 내용	비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출력물 및 Digital File 제출
성적표	평점 2.0 이상	
이수학점 자가점검표	표준교과과정표의 영역별 의무학점 취득 확인	
SPC 충족확인표	이수과목을 통해 모든 항목의 학생수행평가기준 충족 확인	
전학년 설계작품집	교과과정에서 수행한 최소 5개 이상의 설계 작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선택항목	본 세칙 제3조(졸업요건) 4항에서 제시하는 4가지 선택항목 중 2가지 이상의 항목을 성취한 증빙자료	
교과목 및 학점 인정 확인서	편입생, 전부(과)생, 교류학생 등 해당자만 제출 <별지 서식2>	

제5조(편입학) 건축학 전공 편입생의 선발기준은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전적대학에서 수행한 설계과제의 포트폴리오를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대체과목의 인정)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이 교과과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으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을 기 이수한 경우에는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해당과목을 인증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편입생, 전부(과)생, 교류학생의 교과목 인정) 기 취득한 교과목을 인증과정의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 수강자료, 성적증명서 및 해당 설계과목 포트폴리오 등의 학습활동 증빙자료와 함께 「교과목 및 학점 인정 신청서」<별지 서식3>를 제출하여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적대학 교육과정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표준교과과정표 각 영역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편입생의 전공학점 인정은 최대 15학점까지로 한다.
2. 전부(과)생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과목들에 대한 교육과정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전적학부(과)에서 이수한 전공공통 또는 전공인정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3. 우리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은 타 대학으로의 교류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교과목들에 대한 교류대학 교육과정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이를 표준교과과정표 각 영역의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설계교과의 순차적 이수) 설계 교과목은 개설된 학년 및 학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학기 내 중복수강을 금한다. 단, 불일치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심화선택교과 이수) 심화선택영역교과목(4,5학년 공통과목)의 졸업의무학점은 12학점으로 학기당 1과목으로 수강을 제한하며 4학기동안 4개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교과목은 다음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장기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자격은 직전 학기까지의 학점 누계 3.0 이상, 설계학점 및 심화선택교과목을 제외하고 본 세칙 제3조(졸업요건)를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부여한다.
2. 위 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강 희망자 중에서 최종 수강생은 설계 포트폴리오 심사 및 교과목 담당교수의 심층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3. 해당 교과목의 최종 수강생으로 선정되어 학기 중 외부 산업체에 파견되는 학생이더라도 본 세칙 제4조(졸업과제 심사)에 따라 졸업과제 심사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4. 장기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의 충족을 입증하는 교과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형식과 내용은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단기현장실습) 현장실습 교과목은 다음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는 3학년 동계 및 4학년 하계 계절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4학년 동계 계절학기까지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학생 자율활동으로 실시되는 비교과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이를 본 세칙 제 3조(졸업요건) 4항의 선택항목 성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사전 설명회에 참석 후 현장실습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성과물의 형식과 내용 및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한 졸업요건의 인정여부는 건축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